

#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주식회사 코리아벨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)와 에이아이엠투자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을”)는 “갑”의 보유자산의 투자·운용업무에 관하여 2016년 3월 15일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(이하 “원계약”)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)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용어의 정의 및 우선 순위

- 1.1 **정의:** 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본 변경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계약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.
- 1.2 **우선 순위:** 본 변경계약에서 규정된 내용은 원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.
- 1.3 **효력:** 변경된 조항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가지며, 본 변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제외한 원계약의 모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.

## 제2조 수수료의 변경

원계약 제 9 조(수수료) 중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### 제9조(수수료)

2. ② “갑”이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한 달부터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의 <기본운용수수료>는 금오천백십팔만구천팔원(W51,189,008, 부가세 별도)으로 한다. <기본운용수수료>는 **매매완결일(2022.01.14)에 지급하기로 한다.** 다만, 본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“갑”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본 변경계약 체결시점에 당사자들이 예상한 기간보다 현저히 증가 또는 단축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<기본운용수수료>를 조정할 수 있다. “갑”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한 직전 달까지의 <기본운용수수료>는 원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른다

## 제3조 변경계약 체결의 승인

당사자들은 본 변경계약의 체결 이전에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변경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내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변경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2년 1월 // 일

“갑”

(주) 코리아벨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, 17층(서소문동, 태평로빌딩)  
대표이사 이 대 운



“을”

주식회사 에이아이엠투자운용  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, 17층(서소문동, 태평로빌딩)  
대표이사 이 상 혁

